

2021년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2차 공고특허분야

해외진출(예정) 중소기업에게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기업의 해외 분쟁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1년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4.1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 해외진출(예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보호 활동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로 모색
- **총괄기관** : 특허청
- **주관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수행기관** : 전문기관 풀에 등록된 기관(특허법인, 특허사무소 등 IP서비스 기관)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응전략 지원, 총 사업비(최대 5천만원)의 70%~50%지원(지원유형별 상이)
* 지원비용의 경우 일정한도내 기업직접지원이 아닌 수행기관에 인건비, 제반비용 등으로 일괄지원됨

< '21년 대응전략 지원사업 주요 변경사항>

변경사항	'20	'21
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 상표·디자인 통합공고 * 담당부서 : 분쟁예방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 상표·디자인 별도 공고 * 담당부서 : (특허) 특허분쟁대응팀 (상표) K-브랜드대응팀
지원유형 및 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통합 보호전략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분야, 상표·디자인 분야 각 1회 지원 가능(단, 분야별 신청 필요)
패스트트랙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디자인 분야 한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 분쟁 대응 확대 운영 * 경고장전략, 라이선스전략, 권리행사전략, 소송전략, 권리보호전략
소송전략 지원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50백만원(연 1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100백만원(연간 지원횟수 제한 없음) * 동일한 분쟁사안 해결을 위한 연속지원만 가능
선정심사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과제 : 기업 및 수행기관 80점 이상 • 공모과제 : 기업 80점 이상, 수행기관 기술점수(80), 가격점수(20) 고득점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과제 : 기업 80점 이상 • 공모과제 : 기업 80점 이상, 수행기관 기술점수(90), 가격점수(10) 고득점순
가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신성장산업(5점) • 사후추적 미응답 기업(-2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신성장산업 가점(2점) * 4차산업 인정범위 확대(기존 7대분야 → (확대) 16대분야) • 사후추적 미응답 기업(-5점)
소재·부품·장비분야 지원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제출기업 가점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제출기업 가점 부여 • 보호원내 "소부장전담반" 운영을 통해 전문가 상담·자문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권리보호전략 신설 • 소부장기업의 지원 시급성을 고려하여 "종합전략" 유형 수행기관 선정방식 : 지정(4.1~)

1

지원 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수출(예정)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중견 기업

- ▶ 수출기업 : 직접수출 또는 간접수출 기업
- ▶ 수출예정기업 : 수출을 위해 현지 지재권 분석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기업 신청서에 첨부되는 수출예정 관련 제출자료(현지 인증 등 신청서, 박람회 참가신청서 등)
-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지원내용

○ 기업의 특허 분쟁(분쟁이 예상되는) 상황별 맞춤형 대응 전략 제공

세부유형	지원내용		총사업비 (최대)	필수서류 [첨부]	수행기관 선정방식	모집 기간	
경고장 전략	해외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 대응 및 협상전략		50백만원	경고장	지정	수시	
라이선스 전략	해외기업과 이미 체결한 라이선스 갱신 시 대응 전략			라이선스 계약서			
권리행사 전략	해외기업이 자사의 특허 침해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권리행사 전략			피침해 증빙			
소송전략	해외기업과의 특허 소송 대응전략		50백만원	소장			
권리보호 전략(신설) [소부장한정]	해외기업으로부터 이의신청, 무효심판 청구에 대해 권리보호를 위한 방어전략		47백만원	이의 무효 심판 청구서 소부장관련 증빙	공모 지정(소부장 한정)	정기	
종합전략	해외 수출단계 발생 가능한 자사의 지재권 분쟁위험 전반에 대한 대응전략 검토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40백만원	수출예정증빙			
모듈형 대응전략	기본형	분쟁위험에 대한 조사 및 분석	20백만원	수출예정증빙	지정	정기	
	선택 형	A타입	대응전략 모듈 1개 선택	25백만원			사전조사리 포트, IP진단 보고서, 특허보증요구 서류 중 택1
		B타입	대응전략 모듈 2개 선택	30백만원			
		C타입	대응전략 모듈 3개 선택	35백만원			
(모듈) 무효분석, 회피설계, 역공격전략							
나고야 지재권보호 전략	사전진단	유전자원이 이용된 IP확보시 필요한 이행절차 조사 및 준수 지원	33백만원	유전자원 사용예정 증빙	공모	정기	
	IP확보	유전자원 이익공유 절차 미준수에 따른 IP거절, 취소, 무효 등 지원	30백만원	거절통지서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현물+현금)

* [소부장한정] 대상 : 소부장 전문기관 확인서 제출기업 또는 소부장기업 Pool 가입(2021년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Pool 모집 공고 참조)

<수행기관 선정방식>

- ▶ 지정 : 기업이 본 지원사업의 수행을 희망하는 수행기관(특허사무소, 특허법인 등)과 함께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기업과 수행기관을 동시 심사하여 선정
- ▶ 공모(입찰) : 기업을 먼저 선정한 후, 선정된 기업에게 대응전략을 제공할 수행기관을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

※ 수행기관은 지정, 공모과제 신청시 '전문기관 POOL'에 우선 등록되어 있어야 함

<우수 수행기관 안내>

- ▶ 지원사업 신청시 수행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지 못한 기업이 지정과제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전년도 관련 기술분야 우수수행기관(S, A 등급) 안내(이메일 신청 필요, ipkoipa@koipa.re.kr)

□ 지원금액

○ 총 사업비의 70~50% 지원(30~50% 기업자부담)

구분	정부지원 비율	기업부담 비율	
		현금	현물
창업 7년 이내 소기업	총사업비의 70%	10% 이상	20% 이하
중소기업	총사업비의 70%	20% 이상	10% 이하
중견기업	총사업비의 50%	30% 이상	20% 이하

※ 소(창업)은 창업 7년 이내 소기업을 의미하여, 현물은 기업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소송대응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송전략 유형에 한정, 연간 최대 1억원한도 내에서 연속지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1회 지원시 50백만원 한도, 최대 3년 기업이 최초 1회 지원 후, 재신청시 기업선정심사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수행업무의 중복,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수행기관은 수행계획 및 제안금액만 평가(수행계획서 제출 필수)
---------------	--

소재·부품·장비 산업분야 지원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쟁대응 시 필요한 "비특허논문"에 대한 "KAIST 소부장 기술자문단"의 검토·조사 서비스 제공(별도 신청필요)[첨부8 참조]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기업 Pool 가입 시 다양한 서비스 추가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요건) 소부장 기업확인서, 보호원으로부터 분쟁사실을 안내받은 기업 - 즉각적인 분쟁상황 접수, 상담 및 지원을 위한 핫라인(카카오톡) 운영 - 소부장자문단의 IP보호사전진단, KAIST 소부장 기술자문 연계 지원 - 해외 경쟁사 및 소부장 분야 지재권 분쟁정보 제공 권리보호전략 신청 가능
----------------------------	--

2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① 수시모집

- (대상유형) 경고장, 소송, 라이선스, 권리행사, 권리보호
 - (신청기간) 2.22(월) ~ 예산소진시까지(별도 안내)
 - (결과통보) 신청완료 후 최대 14일 이내(영업일기준) 통보(Fast Track*)
 - * 예시) 3월 3일에 신청완료(기업, 수행기관 모두 신청완료되어 있어야 함)한 경우, 3월 23일전까지 선정 통보
- ※ 모집 및 결과통보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될 경우 사전 고지)

FAST TRACK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쟁이 발생하여 지원이 시급한 기업에게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선정에 소요되는 시간(평균 28일→ 14일 이내)을 단축시키는 제도 * (기존) 일정 모집기간 동안 모집 완료 후 일괄 심사 → (변경) 일정 모집기간 상관 없이 기업 및 수행기관이 신청완료한 경우 개별 심사
------------------	---

② 정기모집

- (대상유형) 모듈형 대응전략(기본/A/B/C타입), 종합형, 나고야
- (신청기간) 매월 1일 ~ 21일 모집(3~7월 예정)
 - * 1, 21일이 공휴일이어도 해당일에 시작 및 마감, 4.1~4.21 18:00까지
- (결과통보) 모집완료 후 익월 5일 통보
 - ※ 모집 및 결과통보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될 경우 사전 고지)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증빙서류 등 세부 안내는 첨부5 참조]

- (신청방법)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www.ip-navi.or.kr)에 회원 가입 및 정보입력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 [참고1] 온라인 사업신청 방법
 - ※ [참고2] 기업 지원사업 신청서(해당내용은 온라인에서 작성함)
 - ※ [참고3] 수행기관 사업수행 신청서(해당내용은 온라인에서 작성함)
 - ※ **모든 첨부서류는 PDF 또는 JPG 형태로만 가능(여러파일을 올리고자 할 경우 PDF로 변환하여 업로드)**

구분	제출서류명	필수	해당시	제출방법
기업 신청서류	지원사업 신청서(작성내용 첨부1 참조)	○		온라인입력
	첨부1)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신청서 내 양식참조)	○		신청시스템에 파일 업로드
	첨부2)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중견)	○		
	첨부3)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3개월 이내)	○		
	첨부4) 법인인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업력 확인용)		○	
	첨부5) 대상제품 설명자료	○		
	첨부6) 대상제품 판매자료	○		
	첨부7) 수출 증빙자료(수출 예정자료 포함)	○		
	첨부8) 지재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	
	첨부9)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첨부6 참조]	○		
첨부10) 가점 관련 증빙서류		○		
수행기관 제출서류 (공모(입찰) 과제는 별도안내)	사업수행 신청서(별도작성 불필요, 첨부2 참조)	○		제출완료시 자동생성
	첨부1) 산출내역서	○		온라인 입력
	첨부2) 사업수행 제안서[양식자료실 참고]	○		신청시스템에 파일 업로드
	첨부3) 수행기관 투입인력 현황	○		
	첨부4)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수행기관)	○		

□ 신청요건

- (국세·지방세 납입) 기업 및 수행기관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지원 가능함
 - * 국세·지방세 미납이 확인되었을 경우 선정 취소됨
- (기업 신청요건) 기업의 신청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신청의 반려 또는 심사탈락 처리함
 - 대응전략 분석 대상인 해외기업은 외국 자본만으로 설립·운영되고 외국에 소재할 것
 - 대응전략 분석 대상이 개인인 경우 국적이 외국일 것
 - 지원사업을 신청한 기업(이하 '신청기업')의 지원 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사의 모방품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기업이 해외기업 대상으로 권리행사 하는 경우 해당 지식재산 관련 제품·서비스를 실시한 실적이 있을 것

※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기업의 경우 신청이 제외됨

- ① 휴, 폐업 기업
-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③ 기타 사유로 사업 참여가 제한된 기업

- (수행기관 신청요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하거나 심사에서 탈락 처리함
 - 과제별 수행인력은 6인 이내로 구성하며, 연구보조원 인건비는 총 인건비율의 20% 이내 구성
 - 수행기관의 사업신청시 동일 수행인력의 동일기간 투입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동일 수행인력의 주관기관 해외 지재권보호 지원사업 참여율은 동일 기간 내 100% 이내 구성
 - 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해외 수행기관*은 한국어 의사소통 및 보고서 제출 가능한 인력 보유
- * 해외 수행기관은 협약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협약하며, 정부지원금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 후 지급

기업추천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기업이 추천하여 선정된 경우, 추천인에게 보호원에서 제작한 연구보고서 제공 등 추천 혜택 제공 • 추천한 기업이 신청시, 추천인란에 추천인/기업명/이메일 주소 기재(추천한 기업이 선정된 경우 혜택 별도 안내) <p style="text-align: center;">※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이거나, 수행기관의 추천은 해당되지 않음</p>
---------------	---

<참고1> 지원사업 신청 유의사항

지원사업 신청 유의사항(필수 확인)

- (지원횟수) 기업당 연 1회 지원 가능
* 소송전략유형의 경우 1억원 한도 내에서 가능
- (사후추적조사 협조) 지원 이후, 당해연도 또는 차년도 지원 성과 등 조사 진행시 적극 협조해야 하며, 미협조시 향후 선정심사 시 감점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사업참여 제한)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사업참여를 제한함
 -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정당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협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3년 참여제한
 - 당해년도 사업 참여 후 경고 3회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수행기관의 전년 종합평가 결과가 최하위 등급인 경우 해당분야 1년 참여제한
 - 기타 협약사항 위반 시 해당 협약내용에 따른 사업 참여제한
- (유찰 및 재공고) 특정 과제에 대해 입찰한 수행기관이 없거나 단독입찰한 경우 해당 과제는 유찰되며 유찰된 과제의 재공고에 대해 다시 단독입찰이 된 경우 추가 재공고 없이 적격평가 진행
* 단, 재공고에 대한 단독입찰이라도 단독 입찰자가 기술평가 점수에서 76.5점 이상(90점 만점)을 획득한 경우만 협상 대상자 적격에 해당
- (유찰 시 재신청) 단독입찰 또는 낙찰자가 없어 유찰된 과제의 경우 기존 신청건을 모두 무효로 하고 재공고하며 기존 신청기관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으며 신청서류를 새로 접수 받아 관련 절차를 진행함
- (수행기관 선정심사시 기업참관) 수행기관 경쟁입찰과제에 한하여 사전조사 충실도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기업의 평가 참관 허용 (단, 참관기업은 평가에는 미참여)
- (협약인증) 기업 및 수행기관은 지원사업 협약을 위한 인증을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으로 진행
- (수행 인력 변경) 수행인력 변경사유 발생 시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즉시 보고하고 해당 내용의 승인을 받아야함
- (위탁정산) 수행기관은 보호원이 지정한 위탁정산 기관을 통해서 정산 진행 및 정산비용 납부
* 위탁정산비용은 각 과제별 90,000원(VAT 미포함)으로 경비에 필수 포함, 위탁정산 기관은 협약 후 별도 안내 예정
- (자료 비공개 제재조치) 보호원의 지원사업 결과물의 평가 시 주요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비 정산내역 불인정 및 향후 해당 기업 또는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참여 제한 등의 제재 가능
- (부정행위 및 부정신청 제한) 부정행위 또는 부정신청을 한 경우 정부지원금 등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기업 및 수행기관은 향후 보호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 지원 비용 지급 후에도 사후적으로 부정행위 적발시 환수조치

※ 본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거래, 부정신청, 기타 부정행위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기타 민법상 청구 및 형사조치, 정부기관(국회, 감사원, 특허청, 변리사징계위원회 등)에의 부정행위 적발사실 통보 등 가능

3

선정 및 결과확인

□ 선정기준[첨부4]

- 지원기업 심사 결과 80점 이상 선정
 - (지정과제) 수행기관 심사 점수가 선정여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나, 80점 미만 수행기관은 PM의 집중관리 대상
 - (공모과제) 수행기관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기술점수(90점) 및 가격 점수(10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 기술점수가 76.5점 이상(90점 만점)인 경우만 협상 대상자 적격

□ 선정결과 확인

- 선정결과는 IP-NAVI에서 확인 가능
 - ※ 지정과제의 사업비 제안비용은 원가조사결과 및 예산 등의 기준에 따라 한도액 범위 내에서 증감 가능
 - ※ 공모과제 수행기관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함
- (기업부담 현금 납부) 기업이 협약전까지 기업부담금 중 현금을 보호원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4

문의처

기관명	담당부서	연락처		
		분야	담당자 연락처	
한국지식 재산보호원	특허분쟁 대응팀	사업내용 (유형 문의 등)	기계분야	02-2183-5874
			IT분야	02-2183-5878
			전자분야	02-2183-5847
			화학분야	02-2183-5821
			소부장 관련 문의	02-2183-5871
		행정	신청 및 선정절차	02-2183-5879
			수행기관 및 연구원등록	02-2183-5846
			온라인 신청(시스템)	02-2183-5895
			정산관련	02-2183-5849
		기타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연계	02-2183-5895
이메일 문의	ipkoipa@koipa.re.kr			

※ 사업신청 서류 등은 온라인 신청으로 접수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온라인 설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 : '21.3.3(수) 14시 이후 상시 게재 • 게시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user/kipracafe
---------	---

<참고2> 지원사업 유형별 추진 절차



<첨부 및 별첨>

[첨부1] 온라인 사업신청 방법 안내

[첨부2] 지원사업 신청서(기업)

[첨부3] 사업수행 신청서(수행기관)

[첨부4] 심사 기준

[첨부5] 증빙자료 및 발급기관 등 안내

[첨부6] 지원유형별 필수 서류 안내

[첨부7] 지원유형별 심사·평가 방식 안내

[첨부8] 소부장자문단 비특허문헌 자문 지원

[별첨1]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과업지시서(특허)

[별첨2] 국제 지재권분쟁 위험 사전조사 리포트

[별첨3]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분야 특허분류(CPC코드 또는 IPC분류)

[별첨4] 신성장산업 관련 품목분류(HSK)